

투표구 투표기간 공고 (수정)

민주노총 제 8기 위원장·수석부위원장·사무총장 및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본부장·수석부본부장·사무처장 선거 투표구 투표기간을 선거관리규정 제60조(투표기간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단, 선거관리규정 제61조(투표구별 투표기간의 연장)에 의거하여 투표구 투표기간의 마감시를 기준으로 투표구 자체 투표율이 재적선거인수의 50%에 미달할 때에는 투표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.

- 아 래 -

연번	투표소명	장소	설치 기간/시간	비고
1	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	지부 사무실	2014.12.3일 ~ 9일 09시 ~ 18시 (*설치 시간이 09시 ~ 18시로 수정되었습니다.)	

※ 선거관리규정 제61조(투표구별 투표기간 연장)에 의거 투표구 투표율 50% 미달하는 경우 투표기간 자동연장 됩니다. 단, 투표기간 연장은 12월 9일 18시 까지입니다.

2014년 12월 2일

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(인)

